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55
----------	-------

발의연월일 : 2025. 12. 30.

발 의 자 : 전용기 · 윤준병 · 홍기원
전진숙 · 송옥주 · 한민수
박홍배 · 민병덕 · 허영
박해철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 직무 대리, 의사일정 협의, 교섭단체 간 협의 등 위원회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각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간사(幹事)' 정의는 '일을 맡아 주선하고 처리함' 또는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책'으로, 현행법은 위원회 간사의 대표성 및 중대한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미국의 경우 상임위원회 내에서 정당을 대표하는 위원을 'Ranking Member'로, 독일의 경우 'Obleute'라는 명칭으로 지칭하는 등 주요 국가는 위원회 내 지위의 중요성과 정당의 대표성을 담아내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이에 '간사'의 명칭을 '수석위원(首席委員)'으로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

임의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함(제50조 등).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5제2항 중 “간사와”를 “수석위원과”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간사와”를 “수석위원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간사)”를 “(수석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간사”를 “수석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사는”을 “수석위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간사가”를 “수석위원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간사”를 각각 “수석위원”으로 한다.

제57조의2제2항 단서 중 “간사와”를 “수석위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간사와”를 “수석위원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간사와”를 “수석위원과”로 한다.

제58조제4항 중 “간사와”를 “수석위원과”로 한다.

제59조의2 단서 중 “간사와”를 “수석위원과”로 한다.

제60조제1항 단서 중 “간사와”를 “수석위원과”로 한다.

제67조제3항 중 “간사로”를 “수석위원으로”로 한다.

제69조제3항 중 “간사가”를 “수석위원이”로 한다.

제8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간사와”를 각각 “수석위원과”로 한다.

제84조제3항 후단 중 “간사와”를 “수석위원과”로 한다.

제86조제1항 후단 중 “간사와”를 “수석위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간사와”를 “수석위원과”로 한다.

제121조제4항 후단 중 “간사와”를 “수석위원과”로 한다.

제128조제3항 중 “간사와”를 “수석위원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사인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인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수석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인 위원이 행한 행위 또는 간사인 위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수석위원이 행한 행위 또는 수석위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간사”를 “수석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간사”를 각각 “수석위원”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후단 중 “간사와”를 “수석위원과”로 한다.

②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간사”를 “수석위원”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간사와”를 “수석위원과”로 한다.

제17조제3항 후단 중 “간사와”를 “수석위원과”로 한다.

③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간사와”를 “수석위원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인 위원은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석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인 위원이 행한 행위 또는 간사인 위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석위원이 행한 행위 또는 수석위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③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개정되는 「인사청문회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인 위원은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개정되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수석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④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개정되는 「인사청문회법」 시행 당시

중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인 위원이 행한 행위 또는 간사인 위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개정되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수석위원이 행한 행위 또는 수석위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⑤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 당시 중전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간사인 위원은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석위원으로 본다.

⑥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 당시 중전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간사인 위원이 행한 행위 또는 간사인 위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석위원이 행한 행위 또는 수석위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의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① (생략)	제32조의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① (현행 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u>간사와</u> 협의하 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② ----- ----- <u>수석위원과</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 과 같음)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 정과 개최일시를 <u>간사와</u> 협의 하여 정한다.	② ----- ----- <u>수석위원과</u> ----- -----.
제50조(<u>간사</u>) ① 위원회에 각 교 섭단체별로 <u>간사</u> 1명을 둔다.	제50조(<u>수석위원</u>) ① ----- ----- <u>수석위원</u> ----- -----.
② <u>간사</u> 는 위원회에서 호선하 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u>수석위원</u> 은----- -----.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u>간사가</u>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③ ----- ----- <u>수석위 원이</u> ----- -----.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 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u>간사</u> 의 순으로 위원장의	④ ----- ----- ---- <u>수석위원</u> -----

직무를 대리한다.

⑤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① (생략)

②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하여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이하 이 조에서 “제1교섭단체”라 한다)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

⑤ -----

-----수석위원-----

-----수석위원-----

-----.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수석위원과-----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 다만, 제1교섭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 및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정한다.

⑤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고,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한다.

⑥ ~ ⑩ (생략)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사건과 직접 관련된 사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건을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수석
위원과-----.

⑤ -----
-----수석위원과-----

-----.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수석위원과-----

-----.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 ② (생략)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의를 할 때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시간 할당 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

④ ~ ⑦ (생략)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①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심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illegible]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① --

--

--

--

--

--

--

--

수석위원과

--

--

--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 ⑤ (생략)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수석
위원과-----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수석위원과-----.

⑤ (현행과 같음)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 의원 또는 <u>간사와</u> 협의하여 이 를 요구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요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수석위원과</u>----- -----. ④ ~ ⑥ (현행과 같음)
--	--